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1. 14 선고 2024가합3343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17.

판결 선고2024. 11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49,470,330원 및 이에 대한 2024. 4. 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단 "채권자"는 원고로, "채무자"는 피고로 본다)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 판결,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변·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)

재판장판사이원중

판사정희림

판사유은지

별지

1)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나, 이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, 독촉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본다.